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시·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 동안 배출원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특히,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시장은 현행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사항들과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

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위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기간, 내용, 대상지역, 종류,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

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운행제한의 대상, 시행시간,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